

Hot Issue

: 사업장 생활 속 거리두기

1339



사업장에서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4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한 이후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생활방역’으로도 불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한층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 준수를 필수로 하고 있다.



김수근

의학박사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된 가운데 5월 6일부터 새로운 일상인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4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한 이후 이날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생활 방역’으로도 불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한층 완화된 부분이 있지만 여전히 방역 수칙 준수를 필수로 하고 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국민이 지켜야할 핵심 수칙 5가지를 제시했다. 이는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이다. 행사·모임 등을 일괄적으로 금지했던 이전과는 달리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마스크 착용, 두 팔 간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행위가 가능하다.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스스로 방역을 책임지는 방역주체가 되어야 한다. 방역수칙을 일상과 작업 장소에서 실천하기 위해선 현실에서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할 때 근로자들 사이에 퍼질 수 있는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사업장에서는 거리두기에 대한 신중한 계획과 고려가 필요하다.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은 작업(업무)장소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할 수 있는 영역을 식별하고 2m 거리 유지에 동의하며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이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접촉한다면, 각자 또는 그룹별로 그것들을 확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일이 고객이나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접촉한다면, 각자 또는 그룹별로 그것들을 확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장비와 차량을 공유하였던 경우에는 한 사람당 하나의 장비를 할당하거나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2명 이상 함께 운반하는 일을 해야 하고 2m 이상 떨어져 있을 수 없는 작업이 있는 경우, 먼저 리프팅 보조 기구를 사용하여 1명이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재설계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그리고 휴게실, 흡연 쉼터, 복지 시설, 대기실 또는 회의실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파악한 후, 동시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 글은 코로나19의 전파기간 동안 사업주, 근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가능한 한 2 m 떨어진 곳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사업운영을 계속하거나 다시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알고 조치해야 할 것

우리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안전하게 일하고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 근로자들이 안전

하지 않은 직장생활을 강요받아서 안 된다. 사업장에서는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알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우선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출근을 못할 때는 정부나 사업주로부터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사업 운영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근로자는 출장을 가거나 직장에 출근해서는 안된다.
- 근로자들은 출근하지 못할 경우에 생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불안해할 수 있다. 사업주는 상황에 대해서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코로나19 증상(새로 생긴 지속적인 기침 및 · 또는 고열)이 발생한 근로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결과가 음성으로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 근로자가 코로나19 증상을 가진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나 자가 격리 중인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면 출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야 한다.
- 근로자가 코로나19 확산을 줄이기 위해 집에 머무르라는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지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 근로자들은 '30초 동안 손 씻기'를 더 자주하고 기침예절을 지킨다.
- 표준 소독 제품을 사용하여 접촉하는 표면을 자주 청소하고 소독한다.

사업장에서 코로나19의 전파위험관리

1. 위험관리

사업장에서 코로나19의 위험관리 목표는 기존의 다른 위험요인들의 관리목표와 동일하게 예방 조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합리

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사업주는 예방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작업장 위험을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줄일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코로나19의 위험을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하도록 한다.



66

사업장에서 코로나19의 위험관리 목표는 기존의 다른 위험요인들의 관리목표와 동일하게 예방 조치를 우선순위에 따라 수행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최저 수준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99

- 모든 사업장에서 손 씻기와 작업장의 표면 청소의 빈도를 늘린다.
-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주는 사회적 거리두기(사람 간에 2 m 거리를 두는 것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계속 해야 한다면 근로자들 간의 코로나19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추가 완화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손 세척 및 표면 세척 빈도를 늘린다.
 - 관련된 업무시간을 최대한 짧게 한다.
 - 근로자들 사에 차단막(screen) 또는 차단벽(barrier)을 사용하여 근로자들 사이를 분리한다.
 - 가능할 경우에는 마주보지 않고 한 방향을 보고 업무를 수행한다.
 - '고정 팀 또는 파트너'를 사용하여 각자가 접촉하는 사람 수를 줄인다.
- 근로자들이 다수의 고정 파트너 그룹과 함께 지속적인 기간 동안 대면하여 일해야 한다면, 업무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위험관리에서 코로나19에 취약한 기저질환을 가진 근로자들을 특별히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다수의 고정 파트너 그룹과 함께 지속적인 기간 동안 대면하여 일해야 한다면, 업무활동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 사업주는 위험평가 결과를 직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가능하면 결과를 웹사이트나 공개된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2. 출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가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 다음사항을 검토한다.

- 사업장에서 지원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은 가능하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업장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원수로 현장 운영을 계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육체적 노동을 하는 근로자, 작업을 감독하는 관리자 또는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들을 파악한다.
- 재택근무자들의 일복지를 모니터링하고 특히 동료 대다수가 현장에 있을 경우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재택근무자들의 복지, 심신건강, 신변안전(personal security)을 포함한 업무 준비 및 수행을 위해서 현장에 출근한 근로자들과 연락을 유지한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은 각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현재의 역할 또는 대안적 역할 중 하나로서 재택근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재택근무자들이 집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장비를 제공한다.

1) 고위험 근로자 보호

사업주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은 각별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현재의 역할 또는 대안적 역할 중 하나로서, 재택근무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기저질환을 가진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가장 안전한 역할의 선택권을 제공하여 다른 사람과 2 m 떨어져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2 m 이내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당신은 이것이 허용 가능한 수준의 위험을 수반하는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는 정신 건강과 복지에 대한 지원을 한다. 상담이나 전환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건강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는 근로자들을 말한다.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서 코로나19에 특히 위험한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태를 포함할 수 있다.

- 장기이식을 받은 근로자
- 특정 암 환자:
 - 화학 요법을 받고 있는 암 환자
 -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는 폐암 환자
 - 백혈병, 림프종 또는 골수종과 같이 혈액 또는 골수의 암에 걸린 사람
 - 암에 대한 면역 요법 또는 기타 지속적인 항체 치료를 받은 사람
 - 단백질 키나아제 억제제 또는 PARP 억제제와 같이 면역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표적 암 치료를 받은 사람
 - 지난 6개월 동안 골수 또는 줄기 세포 이식을 받았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
- 모든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포함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
- 감염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희귀질환이 있는 사람 (예: Severe Combined ImmunoDeficiency(SCID), 동형접합겸상세포(homozygous sickle cell))

사업주는 집에 있으라는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근로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 중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 면역 억제 요법을 받은 사람
-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심장질환을 가진 산모를 포함한 모든 임산부
- 심부전과 같은 만성 심장병
- 만성 신장질환
- 만성 간장질환
- 만성적인 신경학적 이상상태(파킨슨 병, 운동뉴런질환, 다발성 경화증 또는 뇌성 마비)
- 당뇨병
- 화학 요법과 같은 치료 또는 스테로이드 정제와 같은 의약품의 결과로 약화된 면역 체계
- 과체중(체질량 지수가 40 이상)

2) 자가 격리가 필요한 근로자

사업주는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조치에 따라 집에 있으라는 권고를 받은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근로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같이 거주하는 가족 중에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 적절한 경우 자가 격리 상태에서 근로자가 집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법정 병가 지급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참조한다.
- 자가 격리자에 대한 현재의 지침을 참조한다.

3) 직장에서의 평등

사업주는 직장 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특정한 요구를 유념해야 한다. 나이, 성별, 장애와 같은 보호가 필요한 특성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또한 사업주는 장애인 근로자들과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조치를 한다.

- 서로 다른 보호 특성을 가진 근로자들의 특정 상황을 이해하고 고려한다.
- 보호되는 특성이 다른 수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하거나 도전적인 것으로 생각되는 상황에 처한 근로자와 적절하게 의사소통한다.
- 평등 법률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한다.
- 장애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정을 하고, 임산부의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한다.

사업주의 바람직한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여기에는 코로나19로부터 근로자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도 포함된다. 사업주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하고 위험 관리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취한다.

- 코로나19가 전파될 수 있는 업무활동이나 상황을 확인한다.
- 감염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파악한다.
- 근로자들이 코로나19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한다.
-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업무활동이나 상황을 제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66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도록 적극 권고한다.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한다.

99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에서 코로나19에 노출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에 대해 모든 근로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따르도록 적극 권고한다. 보호가 필요한 근로자는 집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모든 근로자들의 연락처 및 비상 연락처의 세부 정보가 최신의 것인지 확인한다.
- 관리자가 코로나19의 증상을 발견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예: 질병 보고 및 정부의 지원 제도, 사업장에 있는 누군가가



잠재적으로 감염되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절차에 대해 명확히 한다.

- 비누와 물로 30초 간 손을 씻을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고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손을 자주 씻도록 권장한다.
- 근로자들에게 손 소독제 사용 및 마스크 착용을 권장한다.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 및 업무 변경

-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작업을 변경하거나 2 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설계한다.
- 작업 시간과 장소를 변경하여 작업 인원을 줄인다.
- 사람들이 2 m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를 한다.
- 출퇴근 시간, 휴식시간, 점심식사 시간 등은 시차를 두고 이용한다.
-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한다. 같은 작업 공간에 있

는 사람들의 수를 제한할 수 없을 때에는 2 m 거리를 유지하고, 개인 위생을 지킨다.

- 한꺼번에 여러 사람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출입구를 사용한다.
- ‘가상’ 방법(온라인 등)을 사용하여 업무를 논의하거나 고객과 만난다. 고객이 사업장으로 와야 할 경우, 방문자의 수와 유형을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결정한다. 시간 약속을 하면 편리하다.
- 짐을 싣거나 내리는 동안 운전자들은 대기 구역에 있어야 한다.
- 가능하면 비접촉식 배송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가까이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 사업장에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한다.
-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직접 대면 접촉을 줄인다.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작업장소를 소독하고 청결을 유지한다.

사업주는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작업장 위험을 합리적으로 가능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일 의무가 있다. 사업주는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업을 공유하는 다른 사업주나 계약자와 협력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이는 다음 단계를 순서대로 수행함을 의미한다.

- 모든 사업장에서 손 세척 및 시설과 장비의 표면 세척 빈도를 늘린다.
- 사업장은 첫 번째 선택사항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업장은 정부가 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가이드라인(가능한 경우 2 m 거리를 두는 것)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특정 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장은 그 활동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근로자들 간의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추가 완화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손 세척 및 표면 세척 빈도를 늘림
 - 관련된 업무활동 시간을 최대한 짧게 유지함
 - 스크린이나 차단벽을 사용하여 사람 사이를 분리함

사회적 거리두기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뿐만 아니라 입구와 출구, 휴게실, 식당과 유사한 환경까지 모든 현장에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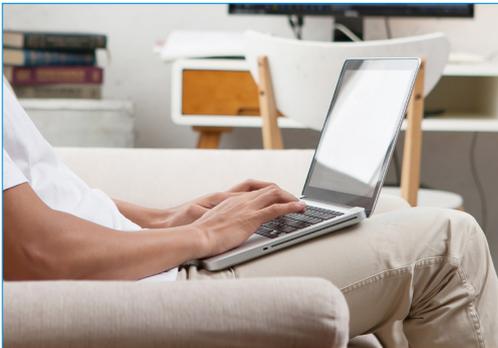
- 대면 작업이 아닌 등을 보거나, 옆으로 나란히 한 상태로 업무를 함
- '고정팀 또는 파트너'를 이용하여 각자가 접촉하는 인원을 줄임
-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대면 작업을 해야 한다면, 업무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지 평가함. 평가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취약한 지 여부를 고려함

사업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근로자는 현장에 도착하거나 퇴근하는 동안, 업무 중, 사이트 간 이동 시 등 가능한 한 2m 이상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특정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업무활동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그렇다면 직원 간의 전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뿐만 아니라 입구와 출구, 휴게실, 식당과 유사한 환경까지 모든 현장에 적용된다. 이것들은 종종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어려운 영역이다.



66

특정 업무활동과 관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업무활동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99

1. 출근 및 퇴근

사업장에 도착 및 출발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도착 시 손 세척을 한다.

- 사업장에 들어오고 나가는 인파를 줄이기 위해 도착 및 출발 시간을 시차를 두어 달리한다.



- 가능한 경우 근로자들이 걷거나, 뛰거나, 자전거를 타고 출근할 수 있도록 추가 주차 또는 자전거 보관대와 같은 시설을 제공한다.
- 회사 출퇴근 차량의 승객을 제한하여 좌석을 비워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한다.
- 출퇴근 시에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출입구를 늘린다.
- 출퇴근 통로에 2 m 간격의 표시를 하고 출입구는 일방통행 방식을 도입한다.
- 출입구에 손 씻기 시설 또는 손 소독기가 제공한다.
- 키패드와 같은 터치 기반 보안 장치를 설치한다.

2. 건물 및 작업장 이동

사람들이 현장을 이동하는 동안 가능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한다. 이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 건물 및 부지 내에서 불필요한 이동을 방지한다. 이동 감소는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허용된 경우 전화기의 사용을 장려하며, 사용 사이사이에 청소와 소독을 한다.

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대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2m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순환근무 및 장비 회전을 줄인다(예: 당일에 단일 고정 작업).
- 작업장 주변 보행로에서 가능한 경우 일방통행을 한다.
- 지면 표시와 같은 표시판을 사용하거나 다른 물체와 함께 2 m 표시를 창의적으로 표시하여 현장 전체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통제한다.
- 셔틀 버스와 같은 현장 이동에 사용되는 차량의 탑승 인원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차량 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 현장을 작업 구역으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작업자 그룹을 물리적으로 최대한 분리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능하게 하는 접근가능 구역과 안전구역을 계획한다.
-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복도, 엘리베이터, 출입구 및 보도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이동이 많은 지역의 사용을 규제한다.

3. 정적 작업하는 작업장

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업대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2m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작업대는 가능한 한 사람당 하나씩 할당해야 한다. 만약 작업대를 여럿이 공유되어야 한다면, 가능한 가장 적은 수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공유해야 한다. 작업대를 2 m 간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기업은 해당 활동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그렇다면 전승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람들이 서로 더 멀리 떨어져 작업할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변경한다.
- 작업대를 더 멀리 떼어놓을 수 없는 곳에서만,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일하지 않도록 배치한다.
- 작업대를 더 멀리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만 스크린을 사용하여 작업대를 서로 분리한다.

4. 회의

대면 회의로 인한 코로나19의 전파를 줄이거나 없애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 절대적으로 필요한 참가자만 회의에 참석해야하며 전체적으로 2 m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 회의 중 전파를 피하기 위해서 펜 및/또는 다른 물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한다.
- 회의실에 손 소독제를 배치한다.
- 가능할 때마다 야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방에서 회의를 개최한다.
- 원격 작업 도구를 사용하여 대면 회의를 피한다.

5. 공유 공간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사용하는 공유 공간을 사용하면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한다.

- 휴게실이나 식사 장소에 대한 혼잡을 줄이기 위해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에 시차를 두고 사용한다.
- 안전한 야외 공간을 사용하여 휴식을 취한다.
- 간격을 유지하고 대면 상호 작용을 줄이기 위해 좌석과 테이블을 재 배치한다.

각 사업장은 사업 규모와 유형, 조직화, 운영, 관리 및 규제 방법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6. 사고발생 시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안전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 사고, 화재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떨어져있을 필요가 없다.
- 사고수습 등 타인에 대한 지원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손을 먼저 씻는 등 즉시 위생 조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론

코로나19 사태는 신규 확진자 수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 방역망 밖 감염이 어느 정도 통제될 때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재유행할 수 있다.

사회적(생활 속) 거리두기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상호 작용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이는 코로나19의 전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에 대비하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란 위험도는 낮아졌지만 유행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는 물론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준비해온 '생활 방역'의 다른 표현이다.

각 사업장은 사업 규모와 유형, 조직화, 운영, 관리 및 규제 방법 등 사업 성격에 따라 실제 실행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위험관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글을 통해서 추가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란다. 🍷